



CCTV 운영관리 기준

제 정 : 2017.01.0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 25 조 1 항에 의거 범죄의 예방 및 화재 예방과 시설물 관리에 따른 상시 관리가 불가능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

제 2 조(적용범위)

CCTV 로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영 제 3 조 제 1 호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 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처리”라 함은 CCTV 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수집·생성·기록·보유·가공·검색·출력·정정(訂正)·복구·이용·제공·공개·파기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제 4 조(관리자의 지정)

- ① CCTV 시설 책임자는 경영지원본부장으로 하며, 담당자는 준법감시인으로 한다.
- ② 제 1 항에 따른 책임자는 CCTV 설치 및 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 ③ CCTV 시설 책임자 및 담당자는 연 1 회이상 별지 4)의 CCTV 운영 실태 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 5 조(CCTV 설치·운영)

- ① CCTV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카메라 대수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단, 자체실정에 따라 카메라 대수, 위치 및 촬영범위를 증감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설치대수	설치위치	촬영범위
1 대	사무실 주출입구	사무실 주출입구 전면
1 대	서버실 출입구	서버실 출입구 전면

- ② CCTV 촬영시간은 24 시간 녹화를 원칙으로 한다.
- ③ DVR은 책임자 및 담당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제 6 조(녹화물의 저장)

- ① 녹화된 데이터는 일정기간 동안만 저장장치에 보관이 되며 별도로 데이터를 보관하지 않음을 분명히 한다.
 - 1. 녹화 방식 : 저장장치에 녹화를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기존 데이터를 삭제해 가며 현재 상황을 녹화하는 방식이다.
 - 2. 녹화 기간 : 30 일 이내
- ② 음성정보는 저장하지 아니한다.

제 7 조(CCTV 의 관리)

- ① CCTV 의 주장치는 다음 각 호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는 열람·재생할 수 없으며, 열람·재생의 필요가 있을 경우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열람·재생할 수 있다.
 - 1. 책임자
 - 2. 담당자
 - 3. 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자
- ② CCTV 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제 1 항의 각 호에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한다.
- ③ 담당자는 CCTV 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 ④ 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 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한다.

제 8 조(안내판 부착)

- ① 사무실 출입자에게 CCTV 설치 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과 학습관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 설치목적 및 장소
 - 2. 촬영범위 및 시간
 - 3. 책임자 및 담당자
- ② 제 1 항에 따른 안내판은 이용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도록 중앙출입구에 설치한다.

제 9 조(화상정보의 보호원칙)

- ①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② 제 1항의 설치목적에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 10 조(화상정보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법 제 18조 제 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법 제 18조 제 2항 제 5호부터 제 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처리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 및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11 조(열람 등의 요청)

- ① 정보주체는 책임자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삭제·처리정지를 규칙 별지 제 8호서식(별지 1))으로 책임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 ② 책임자는 제 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③ 제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임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거절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별지 2)에 따른 결정통지서를 송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 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 하는 경우
5. 열람은 법 제 35조 제 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6. 정정·삭제는 법 제 36조 제 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7. 처리정지는 법 제 37 조 제 2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 12 조(화상정보의 제공)

- ① 화상정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 3 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
- ② 화상정보를 제 3 자에게 제공한 경우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별지 3)에 따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 3 자 제공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제 13 조(보유 및 삭제)

CCTV 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 보유기간은 30 일 이내로 하며 보유기간 만료즉시 삭제하도록 한다.

제 14 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5 조(CCTV 기기의 위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수리, 교체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의 일부를 위탁한다.

- 1.위탁업체 : ADT 캡스
- 2.위탁하는 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노후나 고장으로 인한 수리 및 교체 등의 관리업무
- 3.당사는 위탁업체에게 영상정보의 처리에 대한 권한은 위탁하고 있지 아니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제정일 즉시 시행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열람 [] 정정·삭제 [] 처리정지) 요구서

※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이내
정보주체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대리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요구내용	[] 열람	[]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 정정·삭제	※ 정정·삭제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 처리정지	※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원하는 대상·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1항·제2항, 제36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제43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요구인

(서명 또는 인)

지브에이파트너스(주) 귀하

1. '대리인'은 대리인이 요구일 때에만 적습니다.
2.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열람'란에 [√] 표시하고 열람하려는 사항을 선택하여 [√] 표시합니다.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열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3.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정정·삭제'란에 [√] 표시를 하고 정정하거나 삭제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4.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처리정지'란에 [√] 표시를 하고 처리정지 요구의 대상·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별지2)

개인정보(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거절) 통지서

수신자 (우편번호, 주소)

요구 내용						
열람 일시				열람 장소		
통지 내용 (<input type="checkbox"/> 열람 <input type="checkbox"/> 일부열람 <input type="checkbox"/> 열람연기 <input type="checkbox"/> 열람거절)						
열람 형태 및 방법	열람 형태	<input type="checkbox"/> 열람·시청	<input type="checkbox"/> 사본·출력물	<input type="checkbox"/> 전자파일	<input type="checkbox"/> 복제물·인화물	<input type="checkbox"/> 기타
	열람 방법	<input type="checkbox"/> 직접방문	<input type="checkbox"/> 우편	<input type="checkbox"/> 팩스	<input type="checkbox"/> 전자우편	<input type="checkbox"/> 기타
납부 금액	①수수료	원		②우송료	원	
	계(①+②) 원					
수수료 산정 명세						
사유						
이의제기방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적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항·제4항 또는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발신인 (인)



별지3)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 명칭			
이용 또는 제공 구분	[] 목적외 이용 []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기관의 명칭 (목적외이용의 경우)	담당자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제3자 제공의 경우)	담당자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짜, 주기 또는 기간			
이용하거나 제공한 형태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이용하거나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별지4)

CCTV 운영 실태 점검대장

점검항목	세부 점검항목	이행여부
1. CCTV 의 설치·운영 제한	비공개된 장소에 CCTV 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적정히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개인영상정보 수집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고 있는지 여부	
2. 임의조작, 녹음 금지	CCTV 설치·운영시 녹음기능 사용 및 임의조작 등 금지 여부	
3. 안내판의 설치	CCTV 설치·운영시 안내판 설치 여부	
4. CCTV 운영·관리방침 수립	CCTV 운영·관리 방침 마련 및 공개 여부	
5. 관리책임자 지정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자체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6. 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등	개인영상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 규정, 기타 예외사유가 없음에도 수집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 제공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부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작성, 관리 여부	
7. 열람 등의 청구	개인영상정보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열람대장을 기록, 관리하는지 여부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부시 정당한 사유 및 거부사유 통지 여부	
8. 개인영상	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조치 실시 여부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조치 여부	
	CCTV 녹화장비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